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권 87~87p ③ 권리행사기간	개념,공식-설명	③ 권리행사기간 :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4조, 민법 제573조).	③ 권리행사기간 :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대판 2002.11.8. 99다58136) * 주의 : 통설은 조문의 해석에 충실히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권 355~355p	개념,공식-설명		(4)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 맨 아래에 최신 판례 박스 추가 [판례변경]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중략)…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4680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전합] 2025.7.24. 2023다240299).
수정 사유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